

# Zoom-in Trade



- ▶ COVER STORY: 해외여행객! 전 관세와 무관한가요? ... 1
- ▶ FTA NEWS: 2011년 8월 한-페루 FTA 알면 혜택이 보인다! ..... 2
-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특집 기획시리즈⑥ 통관 절차 등 주의사항 .... 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5
- ▶ WHERE IS GRACE CHANG?: BALANCING AN EXTREME ..... 7
- ▶ ABOUT WRITERS ..... 7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 해외여행객! 전 관세와 무관한가요?

해외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및 별도 탁송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가 강화되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행자들은 입국 전 비행기 또는 선박 안에서 세관에 신고해야 할 품목 목록들을 미리 정리해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해외여행자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7,8 월은 무더운 여름의 중심임과 동시에, 직장들에게 여름휴가를 떠날 수 있는 '부푼 꿈을 꾸는 달' 이기도 하다. 국토 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래 매년 해외 여행객수가 늘고 있으며, 2011년 해외 여행객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해외여행 하면 주로 푸르른 바다, 멋진 리조트, 내리쬐는 햇살 등이 많이 떠오름과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지들에게 선물할 선물 꾸러기가 떠오르곤 한다. 허나, 관세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관세사의 입장에서 해당 선물 등에 부과 될 관세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행자들은 입국 전 비행기 또는 배 안에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 목록들을 미리 정리해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신고대상 물품을 누락하거나, 저가 신고하는 경우 세금뿐만 아니라 30% 달하는 가산세까지도 부담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인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모두 과세 대상이며 술, 담배, 향수 등 면세한도량을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도 모두 신고대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무심코 들여오는 과일, 채소와 같은 농산물의 경우, 개인이 소비하기 위해 들여오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용도에 관계없이 검역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소비하고 국내로는 반입하지 않는 것이 용이하다. 더욱이 열대과일의 경우, 검역절차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되어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국내로 반입하지 않기를 권장한다.

여행자가 직접 휴대 반입하는 휴대품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운송되는 수하물의 경우에도 세관 검사의 대상이며, 필요한 경우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별도로 탁송되는 수하물은 대표적으로 DHL, FEDEX, UPS 등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과 우체국을 통해 반입되는 국제우편물로 나눌 수 있다.

특송화물 그리고 국제우편물과 관련하여, 개인화물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의 경우 과세 가격이 15 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우편물의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되어 일반 수입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면세 통관되는 물품은 우체국에서 수입자에게 즉시 배달된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우편물은 '국제우편물통관 안내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수취 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특송화물의 경우 물품의 가격 및 내용에 따라 크게 3 가지 형태로 통관이 진행된다.

1. 개인사용 물품 또는 상업용 견본품으로서 미화 100 달러 이하의 화물은 물품 목록만 제출하면 바로 통관이 이루어지는 목록통관 대상물품

- 2. 100 달러 초과 2000 달러 이하의 화물로서 간단한 물품내역 신고만으로 통관이 이루어 지는 간이통관 대상물품
- 3. 2000 달러 초과 화물로서 일반 수입신고 대상물품

해외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및 별도 탁송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가 강화된 만큼,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여 입국 심사 시 눈살 찌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윤 순 형  
[shyoon@customsservice.co.kr](mailto:shyoon@customsservice.co.kr)

FTA News

# 『2011년 8월』 한-페루 FTA 발효, 알면 혜택이 보인다!

지난 8월 1일(월) 발효된 한-페루 FTA는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 중 7번째로 발효되는 FTA이다. 페루는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2%에 달하는 유망한 중남미 신흥시장으로서 FTA 효과면에서 기대 해볼만하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한-페루 FTA 전망 및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8월 1일(월) 발효된 한-페루 FTA는 양국간 교역 추세가 2005년 5억 3천만 달러에서 2010년 19억 8천만 달러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양국간 교역 및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sup>(1)</sup> 관세철폐와 관련하여 페루는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에 부과하는 9%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고, 칼라 TV 등 각종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고관세 철폐에 따라 페루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양측 모두 쌀을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하는 등 민감한 농수산물에 대하여 예외적인 취급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기 발효된 FTA의 경우 자율발급방식 또는 기관발급방식 중 한가지를 채택하여 적용하는 반면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일정 기준 하에 기관증명서 자율증명으로 발급방식이 전환된다. 따라서 원산지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1.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이후 발급방식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으로서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업체별, 품목별) 및 미화 2천불 이하 탁송화물 수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율증명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협정 발효 5년 이후(발효 6년차)에는 원산지증명이 전면 자율증명제도로 전환된다.

### 2. 원산지 증명양식 구분

#### (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양식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에 의하여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며, 하나의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2)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양식(원산지신고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기타 상업문서(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에 타자, 스탬프, 인쇄를 통해 영어로 작성되며, 수기 작성시 잉크를 사용하여 정자로 작성해야 한다.

#### 3. 미화 2천달러 초과여부 판정

미화 2천달러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4.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한-페루 FTA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타협정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세관 요청서류를 제시하면 사후적용이 가능하다.<sup>(2)</sup>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 4장 4.5 조 특혜관세대우의 수입 이후 신청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수입자는 그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수입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아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

가. 해당 상품이 수입 시에 원산지 상품이었던 수입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 신고서 또는 진술서

나.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그리고

다. 해당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 당사국이 요구하는 그 밖의 문서

#### 5. 원산지 신고문안

한-페루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신고문안이 아닌 한-EU FTA 등 타협정의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경우 협정 적용을 배제하므로, 반드시 한-페루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문안을 적용해야 한다.

부록 4가-2  
원산지 신고서<sup>4)</sup>

그 문안이 아래에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는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가 기재될 필요는 없다.

“이 문서(인증 번호 \_\_\_\_\_ 5))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분명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들이 \_\_\_\_\_ 6)의 원산지 상품임을 다음 원산지 기준 \_\_\_\_\_ 7)에 근거하여 신고한다.”

\_\_\_\_\_ (장소 및 날짜)<sup>8)</sup>

APPENDIX 4A-2  
ORIGIN DECLARATION<sup>4)</sup>

The origin declaration, the text of which is given below, must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footnotes. However, the footnotes do not have to be reproduced.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authorization No. \_\_\_\_\_ 5)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_\_\_\_\_ 6) preferential origi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origin criteria: \_\_\_\_\_ 7).”

\_\_\_\_\_ 8)

(Place and date)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Remarks)<sup>9)</sup>

<참조 자료 - FTA 협정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 비교>

비교	한-칠레	한-싱 한-ASEAN	한-인도	한-EFTA	한-EU	한-페루
일반수출자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 (선적 분 마다 서류제출)		원산지증명문구 기재 및 서명	6000 유로 미만인 경우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발효 후 5 년 내- 기관발급,미화 2 천불 이하 탁송화물 수출자에 한해 자율발급 가능
업체별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1 회 인증 후 모든 물품에 대해 확인절차 생략		모든 품목에대해 인증번호 기재로 서명 대체	모든 품목에 대해 자율발급 가능	모든 품목에 대해 자율발급 가능
품목별 인증수출자		1 회 인증 후 인증물품(HS 6 단위) 및 해당 협정에 대해 확인 절차 생략		인증품목에 대해 인증번호 기재로 서명 대체	인증품목에 대해 자율발급 가능	인증 품목에 대해 자율발급 가능

<참조 자료 - FTA 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교>

구분	한-칠레	한-싱	한-ASEAN	한-인도	한-EFTA	한-EU	한-페루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치즈 예외)	자율발급	기관발급 (발효 후 5 년) ->자율발급
C/O 유효기간	2 년	1 년	6 개월	1 년	1 년	1 년	1 년
사용회수	1 회 사용원칙(분할가능), 영어사용원칙(단, 미국, EU 의 경우 계약국의 언어사용 가능)						
협정관세 적용신청시기	원칙-수입신고 수리 전 예외- 수리후 사후적용 가능(수입시 관세 납부 후 환급)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선 경

[sklee@customsservice.co.kr](mailto:sklee@customsservice.co.kr)

(1)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11.7.27 일자 제 11-660 호)

(2) 관세청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 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2011.07.29)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

## 외상(外商)이 무상 제공하는 가공생산설비에 대한 통관절차 등 주의사항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현지에 법인을 두고 가공무역을 하는 경우, 또는 중국 현지 가공기업에게 무상으로 가공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과 비준 및 수입절차, 감관기한(사후관리기간) 및 감관내용과 의무사항 내지는 주의사항 등을 문답형식으로 살펴본다.

### 1. 부작가 수입설비란 무엇인가?

가공무역에서 외상이 제공하는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수입설비'(이하 '부작가설비(不作价设备)'라고 칭함)라 함은, 경영회사와 가공무역을 실시하는 외상이 경영회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공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의미한다. 다만, 이때 부작가설비는《외상투자항목에서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설비라면 비록 외상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공생산설비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2. 기업이 부작가설비를 수입하고 사용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1) 부작가설비란, 외상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써 경영회사가 수입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가공비 또는 가격 차이를 상환할 필요도 없어야 한다.

(2) 기업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가공무역(내수판매제품 가공생산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에 종사하는 공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부작가설비는 이 공장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기업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공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가공무역계약(협약) 기한 내에 기업은 매년 가공제품을 70%이상 반드시 수출하여야 한다.

### 3. 기업의 부작가설비 심사비준과 수입절차는?

첫째, 기업은 가공무역계약서(협약서) 및 《가공무역부작가설비신청준비명세서》등 기업의 기본 자료를 가지고 대외경제무역부문에 가서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기업은 대외경제무역부문에서 비준한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해관에 가서 수입면세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관은 심사 후 부작가설비 수칙을 발급해 준다.

셋째, 기업은 동 수칙을 근거로 수입지해관에서 부작가설비 수입통관을 하면 된다.

### 4. 해관의 부작가설비에 대한 감관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해관의 감관기한(사후관리기한)은 부작가설비가 수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관에서 감관을 해제하는 날까지로 한다. 감관기한은 5 년이다.

### 5. 해관은 일시 수입된 부작가설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관하는가?

기업이 가공무역 생산에 필요한 주물 등 부작가설비를 단기간 동안 수입할 경우, 해관은 일시수입화물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를 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단기간이라 함은 반년 내를 의미한다.

**6. 기업이 부작가설비를 수입하고 사용할 경우 어떠한 의무사항이 있는가?**

- (1) 기업은 가공무역계약서(협외서) 중에 외상이 무상방식으로 부작가설비를 제공한다고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 (2) 해관의 감관기한 내에는 기업은 부작가설비를 임의로 국내에서 매매, 교환, 양도, 저당 또는 용도와 사용할 수가 없다.
- (3) 해관의 감관기한 내에는 경영회사는 매년 1 월에 외경무부문과 관할해관에 서면으로 부작가설비사용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4)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가공무역계약(협외서)을 중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거나 부작가설비가 해관감관기한을 경과한 경우, 기업은 즉시 외경무부문과 관할해관에 감관해제수속을 밟아야 한다.

**7. 기업은 어떻게 부작가설비의 해관감관해제 수속을 밟아야 하나?**

- (1) 해관감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미 만기되어 부작가설비를 다시 반송할 경우, 해관은 기업이 신청한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감관해제한다.
- (2) 해관감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기업이 사전에 감관해제를 신청하고 국내에 존치하게 될 부작가설비에 대해서는, 기업은 해당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관은 관련 수입허가증과 검사검역증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감관해제 한다.
- (3) 해관감관기한이 이미 만료되고 기업이 포기신청한 부작가설비는 해관이 직접 감관해제한다.
- (4) 해관감관기한이 이미 만료되고 원 기업이 계속하여 가공무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부작가설비에 대해서는 기업의 관련 수입허가증과 검사검역증 및 세금징수를 면제하고 해관에 직접 감관해제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수입된 부작가설비의 해관감관기한이 만료되고 원 기업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납부는 면제되는데, 관련 수입허가증과 검사검역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해관에 감관수속 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8. 기업의 경내에 있는 부작가설비는 구 기전산품에 따라 관리하는가?**

사전감관해제 또는 감관연한이 이미 만료되었으나 경내에 남아 계속하여 사용되는 부작가설비에 대해서는, 구 기전산품을 수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며 해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기업이 부작가설비를 수입할 때에 이미 구 기전산품의 수입절차를 받은 부작가설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관세청  
부산국제우편세관  
세관장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등**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제정이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 229 조제 3 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였으며, 이는 8월 4일에 제정 및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  
해당 규칙은 원산지물품의 정의와 원산지 결정기준, 누적기준 및 직접운송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와 전시용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 관세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물류의 통관질서를 유지하고,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를 통한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류에 참여하는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 등을 변경한 때에도 이와 같다.

**시행시기**

해당 법률개정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 223 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 51 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10년 1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관세법」제 56 조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 시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재발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부과하려는 것이다.

**부과대상 물품**

제 6901.00.3000 호, 제 6907.90.1000 호, 제 6907.90.9000 호, 제 6908.90.1000 호, 제 6908.90.900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 밀리미터 이상 1 천 300 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자(수출자)에 대하여 9.14%~29.41%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6. 29.)되고, 시행(2011.8.1)됨에 따라 원산지 관련규정 및 협정세율 등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기 위함이며,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8 월 1 일부터 최초로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주요내용

FTA 특례법 시행령은 한-페루 FTA 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 년), 협정 관세율,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한 규정과 원산지 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해당 시행규칙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발효 후 5 년간 기관발급 후 자율발급 전환),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의 범위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조사 방법 및 회시기간 등에 대하여 신설하였다.

###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mailto:jachoi@customsservi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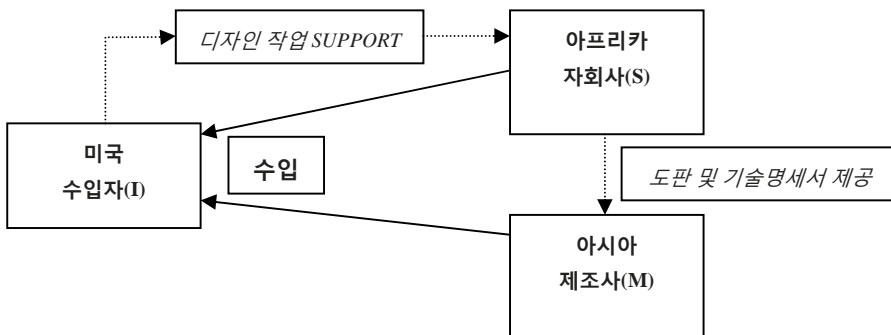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테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 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테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 생산지원 : 평가 및 비례배분 (HQ H031244)

**Assist(생산지원비용)**이란 관세법 제 30 조 1 항 3 호 규정의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①수입물품 생산에 사용 되는 재료 및 부분품, ②공구, 금형, 다이스 등 ③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④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지원비용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떠한 비용이 생산지원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거래사실

수입자 (I)는 완전소유의 아프리카 자회사 및 아시아 소재의 관계없는 제 3 의 제조자로부터 의류를 구매/수입

자회사 (S)는 미국에 거주하는 (I)직원 2 명의 도움을 받아 수입상품을 디자인하며, (I)는 해당 디자인 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

(S)는 의류 생산의 여러 공정을 독립된 제조자들에게 하청을 주고 있으며, (S)가 아프리카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은 (S)가 (I)에게 청구하는 물품가격과 동일함. 이 가격은 (S)가 행하는 디자인 비용 차액을 포함하지 않음.

(I)가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의류의 80%는

‘아프리카 성장 기회 법’에 따라 면세 처리됨.

아시아에서 제조되는 모든 스타일의 의류는 독립된 제조자들(M)이 제조하며, (S)가 아프리카에서 조율함.

(S)는 무료로 (M)에게 도판 및 기술명세서 세트를 제공하며, 기술명세서 세트는 스타일 넘버 참조; 의류 스케치; 시방서 별 치수 등으로 구성됨. 열거된 모든 아이템들이 매 스타일마다 필요한 건 아님.

(S)가 (M)에게 보내는 도판 및 기술명세서 세트는 (S)가 의류 제조 시 사용하는 것과 유사.

(I)에 따르면, (I)의 두 직원은 1 년에 4 번 7 주일간의 아프리카 출장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

(I)의 두 직원은 직접 디자인을 행하지 아니하며, 아프리카에 있는 디자이너들의 업무를 지지하며 평가함. 실제 디자인보다 판촉에 더 많이 관여하며, 아프리카 출장기간 동안에는 완성품을 조사하고 디자인 작업 검토를 행함.

### □쟁점

1. (I)가 미국에서 행하는 특정 디자인 작업이 생산지원에 해당하는가?
2. (S)가 수행한 특정 디자인 작업이 생산지원에 해당하는가?
3. 해당 작업의 일부가 생산지원에 해당한다면, 그 비용산정 방법 및 할당 방법은?

### □쟁점검토

#### 1. 법적 근거

가.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거래가격 방법이다(19 U.S.C. § 1401a).

‘거래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적절하게 할당된 생산지원 비용을 포함한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가격을 말함(19 U.S.C. § 1401a(b)(1)(C)).

거래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이미 검증된 가격에 근접한 하여야 함(19 U.S.C. § 1401a(b)(2)(B)).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는 반면, 당사자들은 그 거래가격을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나. 19 U.S.C 1401a(h)에 의하면 '생산지원'이란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며, 제품의 생산 또는 미국으로 수출판매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제공한 다음의 것들을 말함.

- 1) 원재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입상품에 결합되는 것
- 2) 도구, 다이, 몰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입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
- 3) 수입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
- 4)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행해진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삽화, 디자인, 고안 및 스케치, 다만, 다음의 것은 생산지원에 해당하지 아니 함.
  - 가) 해당 작업을 을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수행하는 경우
  - 나) 해당 작업을 구매자의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으로써, 개인이 행하는 경우
  - 다) 해당 작업이 미국에서 행해지는 기타 기술, 개발, 삽화, 디자인 또는 고안 및 스케치 작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경우

**2. 관련 판례 및 예규**

가. HQ 547847  
Technical Package 는 신발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생산지원에 해당 됨.

나. HQ 548368  
특정 디자인 용역은 수입의류 생산에 필수적이며, 이는 생산지원에 해당 됨.

**3. 쟁점검토**

**가. 쟁점 사안 1:** (I)가 행한 특정 작업이 생산지원에 해당 되는가?

(I)에 따르면, 디자인 작업은 (S)가 행하고, (I)의 두 직원이 행하는 작업은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행하는 일이며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타 디자인 작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므로, 두 직원이 디자인 작업에 공헌하는 바는 생산지원이 아님.

**나. 쟁점사안 2:** (S)가 행한 특정 디자인 작업이 생산 지원에 해당 되는가?

1) (I)가 당 사안을 아시아 소재 제조자 들에게 제공된 작업과 관련한 사안으로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당 사안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두 곳 모두에서 제조된 제품들과 관련된, (S)가 수행한 디자인 작업이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함.

2) (I)는 참조 패턴과 참조 샘플이 공장 참조용에 불과하며 제품생산에 불필요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의류생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함.

3) 제시된 디자인 정보가 단순한 Concept 이상의 것으로서, (S)가 수입제품에 행한 디자인 작업은 생산지원에 해당 됨.

**다. 쟁점사안 3:** 생산지원 비용의 평가 방법 및 비례배분 방법

1) 생산지원의 평가

가) (I)주장에 따르면, (I)가 (S)에게 디자인 작업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체 생산지원에 해당되며, 19 CFR 에 의거 자체 생산지원 금액은 생산지원을 발생시키는 그 비용에 생산지까지 이동하는 비용을 가산한 금액 임.

나) (I)에 따르면, (S)는 (I)가 수입한 의류의 특정 스타일마다 행해진 디자인 작업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나, 해당 작업에 관여했던 피고용인들에게 지불했던 임금 내역은 가지고 있으므로, 총 1 년간의 봉급을 1 역년 동안 생산된 모든 관련 제품에 할당함으로써, 생산지원 비용을 결정하기를 제안함.

다) 또한, 컴퓨터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기술 디자이너, 기술 디자인 보조자 등이 디자인 작업을 행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급된 봉급이 생산지원 금액의 일부를 구성 할 수 있다고 함. 도판 및 기술 명세서 세트를 아시아 제조자 들에게 운송할 때 발생한 특송 비용도 생산 지원에 추가 되어야 함.

라) 예를 들어, 디자인과 관련한 개인들에게 지급된 총 봉급에, 적용 가능한 운송 비용을 추가한 비용이 \$100,000 이고 대상 의류의 50% 가 미국으로 수입된다면, 생산지원 비용은 \$50,000 임.

마) 생산지원 평가 방법은 합리적이며,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부합한다면, 위 평가 방법은 용인 가능 함. 또한 두 번째 쟁점 사안에 대한 결정에 따라, 생산지원의 평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사용된 디자인 작업 과 관련한 것임을 밝힘.

2) 생산지원의 비례배분

생산지원 비용의 비례배분에 관하여, 19 CFR 에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가)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지원 비용의 비례 배분은 사정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안과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행해짐. 실제로 세관이 수용하는 분배 방법은 수입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좌우함.

나) 생산지원을 이용하여 생산된, 예상 총 생산이 미국 수출을 위한 것이라면, (i) 그 총 금액은 첫

번째 선적 분에 비례배분 가능하며, 수입자가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일시에 과세하기를 원하는 경우 (ii) 첫 선적이 이루어 지는 시간까지 생산된 제품의 수에 비례배분 가능하고, (iii) 총 예상 생산량에 비례배분 할 수 있음.

다) 이 외에도 수입자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른 비례배분 방법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예상 생산량의 일부만 미국으로 수출되고, 생산지원이 여러 국가에서 이용된다면, 비례배분 방법은 수입자가 제시하는 문서들이 좌우함.

(I)는 총 예상 생산지원 비용을 각 1 역년 동안 행해진, 첫 면세 수입 건에 비례배분하기를 제안함. TAA 에 따르면, 생산지원 비용을 첫 면세 신고 건에 비례배분 할 수 없음.

수입물품 금액은 다양한 관세율의 영향을 받으므로, (I)는 각 역년 동안의 총 생산지원 비용을 해당 역년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의 총 수입물품 금액 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하기를 제안함.

예를 들어, 1 년간의 생산지원 비용이 \$50,000 이고, 그 해의 총 수입물품 금액이 \$1,000,000(관세율 0% 수입물품 \$500,000; 관세율 5% 물품 \$300,000; 관세율 10% 물품 \$200,000)이라면, (I)는 면세 신고 건에 \$25,000; 5% 세율 물품에 \$15,000; 10% 세율 물품에 \$10,000 을 할당 할 수 있음.

제시된 정보에 의하면, 제안된 비례배분 방법은 19 CFR 과 일치함. 그러나, 실제 비례배분은 평가 부서에 제출된 문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에 주목 해야 함.

**□결정**

미국에서 (I)의 두 직원이 행한 디자인 작업은 생산지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S)가 행한 디자인 작업은 생산지원에 해당함.

두 번째 쟁점 사안과 관련한 생산지원은 위에서 기술했던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음. 생산지원 비용은 각 역년 동안의 첫 면세 신고 건에 비례배분 할 수 없음. 첫 면세 신고 건에 비례배분 하지 않는다면, 생산지원 비용은 위에서 기술한 방식으로 비례배분 가능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Progressing into the next period!



장승희 대표 관세사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처서를 지나 본격적인 가을의 문지방에 다 다녔습니다. 매서운 폭우로 온 국민을 울렸던 여름이 지나고 여느 때와 같은 청량한 가을 하늘과 산뜻한 바람을 반기고 있는 우리이지만, 저 멀리 검은 대륙의 가을 바람은 예와 같지 않습니다. 42년간의 난공불락 카다피정권도 거센 민주화 바람에 쓰러졌지만 리비아에는 부족간 내전이라는 또 다른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진정한 민주화 구현으로 우리만큼이나 뜨겁고 매서운 여름을 보낸 그곳 땅에 스산한 가을바람이 아닌 솔솔한 늦새바람이 불기를 기원합니다.

민족 대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는 전통 시장에도 늦새바람이 산뜻하게 불고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형마트 및 SSM의 진출로 한때 생존위기의 벼랑 끝에 몰렸지만 최근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고 인식을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경기로 서민경제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상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이번 cover story 는 **여행자 휴대품 및 별도 탁송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해외여행자들은 입국 전 비행기 또는 선박 안에서 세관에 신고해야 할 품목 목록들을 미리 정리해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및 별도 탁송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가 강화된 만큼,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여 입국 심사 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8월 1일 페루와 FTA를 발효하였습니다. 중남미의 신흥시장 **페루와의 FTA 전망 및 그 특징**을 기 체결된 FTA들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한 FTA 협정 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 및 발급에 관한 비교 테이블도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부산국제우편세관의 임창환 세관장께서 중국의 관세제도에 대한 그 여섯 번째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외상(外商)이 무상 제공하는 가공생산설비에 대한 통관절차** 등 주의사항에 대하여 기재해 주셨습니다.

관세 평가의 사례는 **생산지원 비용**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평가 방법 및 비례배분** 방법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보았습니다. 숙지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계절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맞추듯 우리들도, 리비아도, 서울시도... 모두 다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아래 풍성한 결실의 계절로 들어가는 만큼 이 새로운 시기가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신발끈을 조이고 호흡을 조정해야 합니다. 부디 고객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period 로 멋지게 시작하시기 기원합니다.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해외여행객 전 관세와 무관한가요?



윤순형 관세사 ([shyoon@customsservice.co.kr](mailto:shyoo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2부
- 통관 2부 팀장
- AEO T/F Team
- 레노버 기업 심사등

FTA News-

2011년 8월 한페루 FTA 발효 알면 혜택이 보인다!



이선경 관세사 ([sklee@customsservice.co.kr](mailto: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기회연재시리즈@ 통관절차등 주의사항



임창환 경영학박사, 관세사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최지아 관세사 ([jachoi@customsservice.co.kr](mailto:ja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US Rulings 연재

생산지원: 평가 및 비례배분



신성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